

2014년도 문화재위원회

제4차 무형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록

- ▣ 회의일시 : 2014. 7. 11. (금요일), 14:00~17:00
-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 출석위원 : 임돈희, 김영운, 김운미, 박성실, 박형철,
이영희, 인묵, 전경욱, 최성자, 최응천,
함한희(이상 11명)
-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목 차

【심의사항】

| | | |
|---|---------------------------------|----|
| 1 | 중요무형문화재 제102호 ‘배첩장’ 보유자 인정 | 공개 |
| 2 | 중요무형문화재 제8호 ‘강강술래’ 전수교육조교 선정 해제 | 공개 |
| 3 |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영산재’ 지정 협의 | 공개 |

【검토사항】

| | | |
|---|------------------------------|----|
| 1 | ‘벼루장’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가치 검토 | 공개 |
| 2 | 중요무형문화재 제55호 ‘소목장’ 보유자 인정 예고 | 공개 |
| 3 | 중요무형문화재 제99호 ‘소반장’ 보유자 인정 예고 | 공개 |
| 4 | ‘아리랑의 날’ 제정(안) 재검토 | 공개 |

심의사항

안건번호 무형2014-04-001

1. 중요무형문화재 제102호 '배첩장' 보유자 인정

가. 제안사항

중요무형문화재 제102호 '배첩장' 보유자 인정 건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2014년도 무형문화재분과 제1차 회의(2014. 1. 10.)에서 홍종진을 중요무형문화재 제102호 '배첩장' 보유자로 인정 예고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관보에 30일 이상 공고하고(2014. 1. 23.~), 동 기간 중 접수된 이의제기 사항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여부에 대한 심의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지정현황

- 지정명칭 : 중요무형문화재 제102호 배첩장
- 지정일 : 1996. 3. 11.
- 전승자현황
 - 보유자(1명) : 김표영(남, '25년생, 배첩 / '96. 3. 11. 인정)

2) 추진경과

- 2013년도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인정) 조사 계획 수립('13. 1. 22.)
- 관련 전승자 추천 및 신청('13. 2. 19. / 신청인 4인)
- 조사자 사전회의 실시('13. 5. 16.)
- 공방조사 실시('13. 6. 24., 7. 17. / 신청자 공방)
- 기량심사 실시('13. 8. 19.~21., 8. 23. / 전통문화교육원)
- 2013년도 제7차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 심의('13. 12. 19.)
 - 조사자의 종합의견서 취합 후 차기 회의에서 검토함

- 2014년도 제1차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 심의('14. 1. 10.)
 - 흥종진을 중요무형문화재 제102호 '배첩장' 보유자로 인정 예고
- 2014년도 제2차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 보고('14. 3. 14.)
 - 중요무형문화재 제102호 '배첩장' 보유자 인정 예고 이의제기 사항 보고
- 배첩장 관계전문가 자문회의 및 현장조사 실시('14. 6. 26.)

3) 관계전문가 현장조사(자문회의 후)

- 일 시 : 2014. 6. 26. (목) 10:00~18:00
- 장 소 : 세종특별자치시, 충북 청주시, 진천군
- 참석자 : 관계전문가 4인 및 담당직원 2명
- 조사 내용
 - 관계전문가 사전회의를 통해 인정예고자가 보존처리한 실적 중 3곳 현장조사
 - 진천 영수사 영산회괘불탱(보물 제1551호) ☞ '13년 보존처리
 - 진천 영수사 신중탱화(충북 유형문화재 제317호) ☞ '12년 보존처리
 - 세종 보광사 산신도(충남 문화재자료 제397호), 칠성도, 독성도 ☞ '11년 보존처리
 - 국립청주박물관 소장유물 영인본 제작(9건) ☞ '11년 보존처리
 - 실제 보수한 문화재의 보존 상태 및 전통기법 여부 등 검토

라. 검토의견

- 중요무형문화재 배첩장은 다양한 종류의 문화재를 수리·복원할 수 있어야 하며, 전통적인 배첩의 의미는 손상되고 훼손된 고서화를 보존하고 복원하여 되살리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기에 인정 예고자가 보존처리한 문화재급 위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음.
- 기량심사 및 전문가 현장조사 등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보유자 인정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람.

마. 의결사항

- 부결함.
 - 배첩은 표구 및 보존처리 기능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인정 예고자는 보존처리 기량이 좀 더 강화될 필요 있음.
- 향후 배첩장 기량조사는 표구 및 보존처리 기능을 포함하여 조사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부결 11명

바. 특기사항 : 없음.

2. 중요무형문화재 제8호 ‘강강술래’ 전수교육조교 선정 해제

가. 제안사항

중요무형문화재 제8호 ‘강강술래’ 전수교육조교 선정 해제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중요무형문화재 제8호 ‘강강술래’ 전수교육조교 이인자가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20호 ‘우수영부녀농요’ 보유자로 인정되어 해당
전수교육조교가 해제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전수교육조교 선정 해제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지정현황

- 지정명칭 : 중요무형문화재 제8호 강강술래
- 지정일 : 1966. 2. 15.
- 전승자현황
 - 보유자(5명) : 박용순(여, '38년생, 창·선소리 / '93. 8. 2. 인정),
박양애(여, '35년생, 창·선소리 / '00. 7. 22. 인정),
김종심(여, '46년생, 창·선소리 / '00. 7. 22. 인정),
박종숙(여, '54년생, 창·기와밟기 / '00. 7. 22. 인정)
차영순(여, '53년생, 창·받음소리 / '00. 7. 22. 인정)
 - 전수교육조교(5명) : 박부덕(여, '42년생, 창·받음소리, '85. 7. 1. 선정),
김국자(여, '40년생, 창·받음소리, '90. 10. 10. 선정)
정순엽(여, '43년생, 창·받음소리, '00. 7. 22. 선정),
이인자(여, '44년생, 창·받음소리, '00. 7. 22. 선정),
김복자(여, '48년생, 창·기와밟기·남생이놀이, '00.
7. 22. 선정)

2) 추진경과

- 전라남도로부터 무형문화재 지정 보고 접수(2004. 9. 20.)
 - 지정명칭 : 전라남도무형문화재 제20호 우수영부녀농요
 - 보유자 : 이인자(여, '44. 2. 8. 생)
 - 인정일 : 2004. 9. 20.(전라남도보 고시일)
- 인정일 : 해당 전수교육조교 해제 신청서 제출('14. 6. 26.)

라. 검토의견

-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는 해당 종목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을 보조하는 사람으로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된 경우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로서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또한 해당 전수교육조교 본인이 해제 신청을 하였으므로 선정을 해제하는 것이 적절함.

마. 의결사항

- 이인자의 중요무형문화재 제8호 '강강술래' 전수교육조교 선정을 해제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원안가결 11명

바. 특기사항 : 없음.

3.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영산재’ 지정 협의

가. 제안사항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영산재’ 종목 지정과 관련한 협의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광주광역시에서 ‘영산재’에 관한 시·도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을 추진 중인 바, 문화재보호법 제70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협의를 요청하여 이를 심의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중요무형문화재 지정현황

- 지정명칭 :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 지정일 : 1987. 11. 11.
- 전승자현황
 - 보유자(1명) : 김인식(남, '43년생, 범패 / '05. 11. 15. 인정)
 - 전수교육조교(4명) : 마명찬(남, '49년생, 범패, '95. 8. 1. 선정),
이수길(남, '55년생, 범패, '98. 2. 25. 선정),
이병우(남, '37년생, 지화, '05. 9. 23. 선정),
한희자(여, '45년생, 작법무, '05. 9. 23. 선정)

(2)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신청 개요

- 신청종목 : 영산재
- 신청단체

| 단체명 | 단체주소 | 법인설립 인가일 | 대표자 |
|------------------|--------------------|-------------|-----|
| (사)광주전통불교 영산회 | 광주광역시 북구 무진성길 1 | 2006. 9. 7. | 박도길 |

- 지정 배경 및 필요성(광주광역시 검토의견)
 - 광주전통불교영산회의 주요 구성원인 월인(박도길), 혜령(이기행), 호산(임점주) 스님은 광주·전남의 사찰에서 개별적으로 영산작법의 기초를 습득하고 이재호(일응스님)와 장상철(일암스님), 이강선(석정스님)에게 예능을 배워 그 체계를 갖추었음.
 - 광주전통불교영산회는 영산재의 예능을 학습하고 전승에 노력해 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호남지역 영산재의 전통성을 찾으려고 끊임없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음.
 - 이에 영산재를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자 함.
- <2014. 5. 23. 광주광역시 문화재위원회(3분과) 심의>

라. 검토의견

- 대상단체 및 단체구성원은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와 중복되지 않음.

마. 의결사항

-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영산재’ 지정에 이견은 없음.
 - 다만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무형문화재 종목 명칭을 조정하도록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조건부가결 11명

바. 특기사항 : 없음.

검토사항

안건번호 무형2014-04-004

1. '벼루장'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가치 검토

가. 제안사항

'벼루장'의 중요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 가치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충청남도에서 '벼루장'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신청('13. 9월)이 있어, 2014년도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인정) 조사계획에 따라 관계전문가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신규종목 지정 가치 여부에 대하여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청개요

- 신청종목 : 벼루장
- 신청자 : 김진한(남, '41년생,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보유자)

2) 추진경위

- 충청남도 벼루장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신청서 제출('13. 9. 16.)
- 2014년도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인정) 조사 계획 수립('13. 12. 30.)
- 중요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가치 서면조사('14. 1. 27.~2. 25.)

3) 서면조사

- 조사자 : 관계전문가 4인
- 조사기간 : 2014. 1. 27.~2. 25.
- 조사내용 :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조사의 조사지표(개인) 항목의 전승가치 조사

4) 벼루장 무형문화재 지정 현황

- 중요무형문화재 : 제94호 벼루장, 1989년 12월 지정,

이창호 보유자 사망에 따라 1990년 7월 지정 해제

○ 시도무형문화재

- 경기 : 제26호 벼루장, 1998년 지정, 보유자 1명
- 충북 : 제18호 자석벼루장, 2008년 지정, 보유자 1명
- 충남 : 제6호 보령남포벼루제작, 1987년 지정, 보유자 1명

라. 검토의견

- 벼루는 문방사보의 하나로, 1989년 중요무형문화재 종목으로 지정되었다가 보유자 사망으로 해제된 종목임.
- 종목 지정가치 조사 결과, 조사위원 대부분이 전승가치가 충분하다고 평가하였으나, 조사위원 중 한 분은 충청남도에서 무형문화재로 지정, 전수교육이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요무형문화재로의 지정 검토가 회의적이라는 견해도 있었음.
- 따라서 벼루장에 대한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가치는 있다고 판단되나, 보유자 신청 공모 전에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종목의 역사성, 학술성 등 전승가치를 심층 검토하고자 함.

마. 의결사항

- 학술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지정가치를 재검토 하도록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원안가결 11명

바. 특기사항 : 없음.

2. 중요무형문화재 제55호 ‘소목장’ 보유자 인정 예고

가. 제안사항

중요무형문화재 제55호 ‘소목장’ 보유자 인정 예고 건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2013년도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인정) 조사계획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대하여 2014년도 2차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 심의 결과, 신청인 중 기량이 우수한 2인의 심층기량심사 실시
후 재검토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2014년 5월 심층기량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보유자 인정 예고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지정현황

- 지정명칭 : 중요무형문화재 제55호 소목장
- 지 정 일 : 1975. 1. 29.
- 전승자현황
 - 보유자(1명) : 박명배(남, '50년생, 소목 / '10. 4. 22. 인정)
 - 전수교육조교(2명) : 김금철(남, '55년생, 소목 / '82. 4. 1. 선정),
조화신(남, '62년생, 소목 / '96. 2. 1. 선정)

2) 추진경과

- 2013년도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인정) 조사 계획 수립('13. 1. 22.)
- 관련 전승자 추천 및 신청('13. 2월 / 신청인 12인)
- 조사자 사전회의 실시('13. 8. 7.)
- 2013년도 제5차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 심의('13. 9. 12.)
 - 신청인 12인 중 서류심사 결과 상위 4인에 대한 현지조사 실시
- 공방조사 실시('13. 11. 23.~24., 11. 30.~12. 1.)

- 2014년도 제2차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 심의('14. 3. 14.)
 - 소병진, 엄태조에 대한 심층기량심사를 실시한 후 차기 회의에서 재검토
- 심층기량심사 실시('14. 5. 25.~29.)

3) 현지조사

- 조사자 : 관계전문가 5인
- 조사대상자 : 김금철('55년생, 전주조교), 소병진('52년생, 전북무형), 엄태조('44년생, 대구무형), 정진호('53년생, 경남무형)
- 공방조사 : '13. 11. 23.~24, 11. 30~12. 1. / 전북, 경남, 대구 등 조사대상자 공방
- 기량심사 : 공방조사시 공통과제(결구법) 부여, 시연과정 심사
- 조사내용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조사(개인)의 지표항목 조사

4) 심층기량심사

- 심사자 : 현지조사에 참여한 관계전문가 5인
- 조사대상자 : 소병진('52년생, 전북무형), 엄태조('44년생, 대구무형)
- 심사기간/장소 : '14. 5. 25.~29.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 심사방법 : 공예품(서안) 제작 기능의 전통성, 우수성, 완성도 심사

라. 검토의견

- 조사결과 및 기량심사 검토의견을 종합해보면 엄태조, 소병진의 기량이 우수하고, 목가구 제작 기능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2인 모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 예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의견임.
- 향후 소목의 전승기반을 공고히 구축하고 전통 목가구 제작 기능의 보존·전승 활성화를 위해서 기량이 우수한 2인 모두를 소목장 보유자로 인정 예고할 필요가 있음.

마. 의결사항

- 소병진, 엄태조를 중요무형문화재 제55호 '소목장' 보유자로 인정 예고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원안가결 11명

바. 특기사항 : 없음.

3. 중요무형문화재 제99호 ‘소반장’ 보유자 인정 예고

가. 제안사항

중요무형문화재 제99호 ‘소반장’ 보유자 인정 예고 건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중요무형문화재 제99호 ‘소반장’의 원활한 전승을 위하여 2013년도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인정) 조사계획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보유자 인정 예고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지정현황

- 지정명칭 : 중요무형문화재 제99호 소반장
- 지정일 : 1992. 11. 10.
- 전승자 현황
 - 보유자 : 없음.
 - 전수교육조교(1명) : 이종덕(남, '59년생, 소목 / '96. 2. 1. 선정)

2) 추진경과

- 2013년도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인정) 조사 계획 수립('13. 1. 22.)
- 전승자 신청 공고 및 접수('13. 2. 19.~4. 5. / 신청인 3인)
 - 김춘식('36년생), 추용호('43년생), 장경춘('50년생)
- 조사자 사전회의 실시('13. 5. 8.)
- 공방조사 실시('13. 5. 30.~5. 31.)
- 기량심사 실시('13. 6. 10.~6. 21., '14. 2. 20.)

3) 현지조사

- 조사자 : 관계전문가 3인

- 조사대상자 : 김춘식('36년생, 나주), 추용호('43년생, 통영)
 - * 장경춘은 인정조사 참여 포기원 제출('13.6.2.)
- 공방조사 : '13. 5. 30.~5. 31. / 나주, 통영 등 조사대상자 공방
- 기량심사(1차) : '13. 6. 10.~6. 21. / 국립무형유산원
 - 소반을 백골상태까지만 제작
- 기량심사(2차) : '14. 2. 20. / 국립무형유산원
 - 백골상태까지 제작한 소반에 칠 작업을 추가
- 조사내용 :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조사(개인)의 지표항목 조사

라. 검토의견

- 중요무형문화재 제99호 '소반장' 보유자 인정조사 결과, 조사위원(3인)은 김춘식은 나주소반을, 추용호는 통영소반의 전통기법을 잘 전수받아 계승하고 있으며, 신청자 모두 중요무형문화재 소반장 보유자로 지정,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였음.
- 소반장은 2009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보유자가 부재한 종목으로 향후 소반의 전승기반을 공고히 구축하기 위해 신청자 2인 모두를 소반장 보유자로 인정 예고할 필요가 있음.

마. 의결사항

- 김춘식, 추용호를 중요무형문화재 제99호 '소반장' 보유자로 인정 예고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원안가결 11명

바. 특기사항 : 없음.

4. ‘아리랑의 날’ 제정(안) 재검토

가. 제안사항

‘아리랑의 날’ 제정(안)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융성정책-문화가 있는 삶」 과제 중 아리랑의 재해석과 국민축제화와 관련하여, 국민 모두가 아리랑을 향유하여 생활문화 및 문화소비로 확산하기 위한 항구적인 기반으로 ‘아리랑의 날’ 제정을 추진 중임.
- 2014년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 제3차 회의('14. 5. 9.)에서 ‘아리랑의 날’ 제정 대신 ‘아리랑의 달’ 제정을 제안함에 따라 유관 기관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아리랑의 날’ 제정(안)에 대하여 재검토하기 위하여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추진경과

- 아리랑 대토론회 개최('13. 12. 13./국립고궁박물관 강당)
 - 아리랑의 가치 재해석, 국내 전승보존 및 해외 전승확산, 생활 속 저변 확대 방안, 국민대통합 상징화 방안 등에 대한 발표 및 토론
- 아리랑 전승활성화 관계전문가 회의 개최('14. 1. 16./고궁뜨락)
 - 관계전문가 : 5명 참석
 - 주요내용 : 아리랑의 날 제정 필요성 여부 및 날짜 선정 방법, 지역 아리랑 전승활성화 방안 검토 등
 - 아리랑의 날 날짜 선정 관련, 나운규 아리랑 영화 상영일(10. 1.)로 의견이 모아짐(나운규 아리랑 영화 상영을 계기로 아리랑이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전승 및 확산되기 시작한 날로 의미가 있으며, 유네스코 등재일은 유네스코에 등재된 타 종목과의 변별성이 없다는 의견임).
 - ※ 아리랑 관련 민간단체에서 설문조사 등을 거쳐 10월 1일을 아리랑의 날로 선포함(겨레기념일 아리랑의날 제정위원회/2013. 10. 1.)
- ‘아리랑의 날’ 제정 여론조사 실시('14. 2~3월)

- 조사기간 : 2014. 2. 24.~2. 28.(일반국민), 2. 24.~3. 5.(전문가)
- 조사대상 : 일반국민 1,024명, 전문가 252명(문화재위원, 전승단체 등)
- 조사결과(아리랑의 날 제정 필요성 및 날짜 관련 내용)
 - 아리랑의 날 제정 필요성 : 필요하다(일반국민 66.1% / 전문가 69.4%)
 - 아리랑의 날로 적절한 날짜
 - ▷ 일반국민 : 유네스코 등재일(12. 5. / 53.1%), 아리랑 상영일(10. 1. / 42.0%)
 - ▷ 전문가 : 유네스코 등재일(12. 5. / 40.9%), 아리랑 상영일(10. 1. / 40.5%)
- 2014년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 제3차 회의 검토('14. 5. 9.)
 - '아리랑의 날' 제정 대신 '아리랑의 달' 제정을 제안함.
 - 아리랑에 대한 지역별 행사가 10월에 집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10월 한 달을 '아리랑의 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 10. 1일은 국군의 날과 중복, 12. 5일은 타종목과의 변별성 없음.
- 유관 기관 의견수렴('14. 5월~6월)
 - <문화융성위원회>
 - 10월 1일을 '아리랑의 날'로 제안
 - 10월 1일을 기점으로 민족의 노래로 확산
 - 국군의 날과 중복성은 있으나, 타 기념일의 경우도 겹치는 사례 있어 문제없음(스승의날·가정의 날(5. 15.), 성년의 날·발명의 날(5. 19.) 등).
 - 한글의 날을 중심으로 한 한글 주간 참고 필요
 - 아리랑 대축제와 연계를 위하여 6월 중으로 제정안을 확정할 필요
 - <(재)국악방송>
 - 영화 아리랑이 아리랑을 대중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하나, '영화 상영일'이 그 이전부터 존재해왔던 아리랑의 의미를 대표하기에는 부족하지 않을까 우려됨.
 - 한편, 유네스코 등재일은 아리랑의 세계화를 통한 새로운 시작을 나타낸다는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다소 부족하다는 생각임.
 - 보다 많은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보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2) 제정방안

- 법령에 의하지 않는 자체 기념일로 제정 시행
 - * 법령 기념일 : 국경일(5개),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45개), 개별 법령(23개)
 - ** 우리 청 소관 자체 기념일 : 문화재 방재의 날(2. 10.)

- 10월 1일을 아리랑의 날로 제정하고, 아리랑의 날을 중심으로 ‘아리랑의 주간’을 설정하여, 아리랑 행사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함.

마. 의결사항

- 10월 1일을 ‘아리랑의 날’로 제정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원안가결 11명

바. 특기사항 : 없음.